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1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85,295,014	8,558,868
일반회계	258,695,942	7,760,878
특별회계	26,599,672	797,990
기타특별회계	26,599,672	797,990
상수도특별회계	10,797,764	323,93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63,240	22,89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904,189	57,12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02,782	18,083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12,216,697	366,50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00,000	9,000
기반시설특별회계	15,000	45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사고이월사업은 별첨 "사고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046,43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직무수행경비
3. 법정의무부담금(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5. 재해대책 및 복구비

제 7 조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세), 재정보전금,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